

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1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)

가. 제안이유

-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보훈영예수당 상향 조정(안 제8조)
 - 10만원 ⇒ 15만원
- 국가보훈대상자 신설(안 제8조제4호)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수당의 지급제외 규정 수정(안 제10조)
 - 수당 지급대상자가 안 제8조 각 호의 법률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때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

- 조문 일부내용 및 서식 개정(안 제8조, 제11조, 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)
 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[“자(者)” ⇒ “사람”]
 -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성별구분란 추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음. 다만, 보훈영예수당이 50%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 최근 우리군 지급대상인원, 강원도내 시군별 지원현황, 국가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추이 등을 참고하여 심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, “10만원”을 “15만원”으로, “수당을 받는”을 “해당”으로, “사망할 경우에는”을 “사망한 때에는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1호 중 “따른 보상을 받는 자”를 “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자”를 “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해당하는 자”를 “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수당의 지급제외)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법률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때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 조례”를 “제8조”로,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, “수당을 환수하여야”를 “그 수당을 되돌려 받아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

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, “수당을 받은 경우”를 “지급받은 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지급 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

제11조제1항제3호 중 “경우”를 “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”을 “제1항에 따라 환수할”로, “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”를 “제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.

